

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24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년 6월 20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조의 정의를 관련법 조항을 인용하여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, 안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 조례안의 내용 중 어린이 안전 보장에 필요한 ‘복장 또는 장비’ 등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적 수정이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“어린이”와 “보호자”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정의를 준용하여 통일성을 기함(안 제2조).
- 나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확충·정비사업 중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한 “복장, 장비”를 “설비, 용품”으로 수정함(안 제5조제1항제4호).
- 다. 시장이 어린이에게 지급토록 한 “복장 및 장비”를 “안전용품”의 지원으로 수정함(안 제6조).

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사람”을 “13세 미만의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친권자”를 “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설비, 복장, 장비”를 “시설, 설비, 용품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 “(복장 및 장비의 지급)”을 “(안전용품의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복장 및 장비를 지급”을 “안전용품을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복장 또는 장비를”을 “안전용품을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어린이”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<u>사람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보호자”란 <u>친권자</u>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·연구·홍보</p> <p>2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</p> <p>3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</p> <p>4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<u>설비, 복장, 장비</u> 등의 확충·정비</p> <p>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<u>13세 미만의 사람</u>-----.</p> <p>2. ----- <u>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</p> <p>4. ----- <u>시설, 설비, 용품</u> -----</p> <p>5.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
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복장 및 장비의 지급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6조(안전용품의 지원) ① -----

----- 안전용품을 지원 -----.

② -----

----- 안전용품을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2.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
3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
4.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
5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
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·연구·홍보
2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3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
4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, 설비, 용품 등의 확충·정비
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용품의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정보의 교류 및 협력)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, 영·유아보육시설, 전문기관,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구조 활동)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, 사고로 인한 응급

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시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